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2회 임시회(2022. 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7
----------	------

2022. 1. 2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
- 나. 제 출 일 : 2022. 1. 7.
- 다. 회 부 일 : 2022. 1. 10.

2. 제출이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통·폐합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통합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목적 추가 (안 제1조)
-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추가 (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추가 (안 제3조)
- 라. 위원회 통합에 따른 간사 변경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1. 11. 11.~ 12. 1.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각 운영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여 개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자칫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례의 폐지로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치법규 제명 결정 원칙에 따라 제명은 규정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이 잘 나타나게 해야 함. 이에 기존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주요내용을 대표하고 최근 건강생활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표 1. 조례명칭 결정 현황>

조례명	지방자치단체명	비율
	합 계	57 (100%)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강화군, 거창군, 계룡시, 고성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례군, 군포시, 김포시, 김해시, 남동구, 남해군, 대구광역시 동구, 밀양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 부천시, 사천시, 산청군,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아산시, 안양시, 양산시, 양평군, 용인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연수구, 정읍시, 진주시, 창원군, 창원시, 청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해남군	47 (82.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 천협의회	시흥시, 구리시, 안산시, 연천군, 완주군, 익산시, 진도군,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10 (17.5%)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유사·중복 기능수행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운동을 도모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 이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라는 개정 목적과는 맞지 않은 조례 관리의 편리성에 치우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다소 보일 수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별 제목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분 명기하고 주요

조문 검토 내용과 같이 조례제정의 결정 원칙에 따라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명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